

미국판례

원심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한 현실적 악의의 입증 필요성을
배심원단에게 실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다.

Carney v. Santa Cruz Women Against Rape
18 Med. L. Rptr. 1123(캘리포니아주 제 6 항소법원, 1990)

사건개요

1. 1984. 6. 23.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Carney 와 Mark Wilson 은 역시 직장 동료인 Karen(19 세 · 여자)과 외출하여 Wilson 이 산 술을 같이 마셨다.

다음날 Karen 은 Santa Cruz Women Against Rape (산타크루즈지역 강간대책여성협회, 이하 FSCWARJ 라고만 한다)를 접촉하여, 자신이 술을 먹고 정신을 잃은 후 Carney 와 Wilson 이 자기에게 나쁜 짓을 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즉, 자기가 정신이 들었을 때는 자동차의 앞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자기는 한 남자의 무릎을 베고 있었고, 옷은 벗겨져 있었으며 Carney 와 Wilson 이 「확실히 성적인 방법으로 그녀를 만지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사건발생 후 5 개월이 지난 1984. 11. 24.Karen 의 요구에 의하여 SCWAR 는 정기협회보에 Carney 와 Wilson 의 인상착의, 주소, 직장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폭행/강간미수』라는 제목하에 그들이 「Karen 에게 강제로 자신들을 받아들이게 하였다」는 내용을 삽입하였다. 위 회보는 산타크루즈 지역 공공의 장소에도 게시되었다.

SCWAR 는 위 회보를 발간하기 이전에 Carney 와 Wilson 을 접촉한 바 없으며, 위 회보의발간 마감일자는 없으며 또 사실확인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사실조사를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SCWAR 의 위와 같은 회보 발간은 오직 Karen 과의 인터뷰와 그녀의 행동에 근거하여 행하여 진 것이었다.

2. Carney 는 Karen 과 SCWAR 를 상대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및 고의로 정신적 고통을 가함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Karen 은 Carney 를 상대로 폭행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상호간 사과편지를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화해하였는데 Karen 의 사과편지는 (위 회보에 기재된 일자 등에 당신(Carney) 또는 Wilson 에 의해 강간당한 적이 없으며, 성적인 관계도 가진 바 없다)는 것이었다.

3. 위 소송은 SCWAR 에 대하여만 진행되었는데, Carney 와 Wilson 은 각 증언하기를, 1984. 6.23. 그들은 Karen 과 데이트를 나가서 그녀와 다양한 행위의 성적 애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와 같은 행위는 그녀의 동의를 받아 행하여진 것이고, 그녀는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취하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이 있다. Karen 은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술 녹취서에 의한 증언이 배심원단에게 구술되었다. 그 증언내용은 기본적으로 그녀가 SCWAR 에 이야기한 내용이었다. 즉, 자기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었고, Wilson 의 자동차조수석에서 정신이 들었는데 Wilson 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고 Wilson 이

자기의 티셔츠를 벗기고 몸 상부를 만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또한 차 조수석 문이 열려 있었으며 자신의 다리가 벌려져 있었으며 바지의 지퍼가 내려져 조금 벗겨져 있었으며 Carney가 손을 자신의 팬티 안에 넣은 채 자신의 다리 부근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녀는 「Carney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4. 배심원단은 판사에 의해 SCWAR의 위 회보는 캘리포니아주 민법전 제 47 조 제 3 항에 의해 특권이 인정되므로, Carney는 SCWAR가 현실적 악의 (actual malice)를 가지고 행동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받았고, 판사는 위에서 말하는 악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증오 또는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였거나, 또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행동하였거나, 또는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외의 이유로 그 회보에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을 때는 피고는 악의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다. 」

이에 대하여 SCWAR는 판사의 배심원단에 대한 위 악의의 설시는 부적절한 것이며 오히려 위 악의는 주 민법전 48(a), subdivision (4)(d)에 정의되어 있는 개념으로 설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원고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서는 원고가 New York Times 판결과 같은 정도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은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5. 배심원단은 원고승소의 평결을 하고, 원고에게 보상적 손해로서 7,500 달러, 징벌적 손해로서 25,000 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피고(SCWAR)는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은 8개 항의 주장을 제기 하였다.

- (1) 배심원단은 피고의 과실이 명예훼손의 한 요건이라고 설시받지 아니하였다.
- (2) 배심원단은 원고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는 New York Times 판결과 같은 정도의 악의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시 받지 아니하였다.
- (3) 배심원단은 원고가 추정손해(presumed damages)를 배상 받기 위하여서는 New York Times 판결과 같은 정도의 악의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시 받지 아니하였다.
- (4) Karen의 화해를 위한 편지가 증거로서 잘못 채용되었다.
- (5) 강간으로 인한 쇼크증상에 관한 감정증언이 배척된 것은 잘못이다.
- (6) 1심 법원은 간이재결 결정(summary adjudication rulings)을 따르지 아니 하였다.
- (7) 원고 소송대리인의 부정행위로 1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 (8)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이 과대하다.

판결요지

1. 1심 법원이 배심원단에게 명예훼손소송에 있어서 현실적 악의(malice in fact)의 입증이 캘리포니아주 민법전 제 47 조 제 3 항에 보장된 출판업자의 특권을 배척함에 필요하다고

설시한 것은 잘못이다. 비록 정확한 법률상의 기준이 오직 과실의 입증만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증오 또는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그 내용의 진실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성적 폭행 또는 희롱을 일반적인 주제로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회의 회보는 공익적 사항을 포함하므로, 사인인 원고가 협회를 상대로 허위의 강간 기사를 게재함으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는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하여야 한다.

3. 1심 법원이 배심원단에게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법률상 정해진 규칙은 없으므로 배심원단은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의 명성, 수치, 사회에 있어서의 유명도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고 설시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위 설시에 의하여도 배심원단이 현실적 악의의 입증 없이 추정손해를 명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은 아니다.

4. 원고가 피해자를 공격하여 강간하려 했다는 기사를 원인으로 한 명예훼손소송에서 강간피해자(여자)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소송 화해의 내용으로 씌여진 사과편지를 증거로 채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화해에 관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금하는 증거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 위 편지는 화해당사자인여자가 아닌 출판물 내용의 허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로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판결이유(요약)

1. 배심원단이 피고의 과실이 명예훼손의 한 요건이라고 설시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SCWAR는 1심 법원의 배심원단에 대한 설시가 피고의 과실이 원고의 명예훼손소송의 한 요건이라는 점을 알리지 않았고, 그러한 설시 때문에 피고는 과실 없이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다. 연방대법원은 Gertz v. Robert Welch, Inc.(418 U.S. 323, 347)에서 과실 없이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 주는 스스로 개인의 명예훼손소송을 위한 책임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보다 최근의 판결로는 캘리포니아주 최고법원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과실이 그 기준이고, 뉴스미디어등에서 사인에 관한 출판 등을 하는 것은 공익에 관계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주 민법전 제:1 조 제 3 항에 의한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고 판시 하였다.(Brownly. felly Broadcasting Co. 48 Cal. 34. 711)

「개인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악의가 아니라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은 거의 이견 없는 법률상 견해이며 우리도 이 원칙을 지지한다.」 따라서 사인인 원고는 보상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악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은 주 정부가 사인의 명성을 보호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명성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개개인간에 대한 본질적 존엄과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이다. (위 eertz v. Robert Welch, Tnc. 판결 341 페이지 및 Rosenblatt v. Baer (1966) 383 U.S.75,92)

공무원 또는 공공의 인물과는 달리 사인은 더욱 피해를 입기 쉽고, 따라서 각 주는 그들을 보호함에 있어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 사건 제 1 심에서는 배심원에게 SCWAR 의회보는 위 제 47 조 제 3 항에 의해 특권을 가진 출판물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가지고 행동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설시 하였으나, 위와 같은 설시는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배심원은 피고의 악의가 아니라 과실이 명예훼손성립의 한 요건이며, 피고가 그 회보에 그와 같은 내용을 출판하기 전에 그 내용의 진부를 검토함에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가지고 행동하였는가를 고려하여야만 했다.

원고는 1 심 법원의 배심원단에 대한 설시는 과실보다 고도의 잘못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설시는 문제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첫째, 「증오 또는 악의」라는 개념이 반드시 「과실」보다 상위의 개념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증오 또는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만으로 피고가 그 내용의 진실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둘째, 1 심 법원의 설시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외의 이유로」 그 회보에 그와 같은 내용을 게재하였을 때는 피고는 악의를 가지고 행동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결국 배심원단에게 피고의 과실 없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존재 할 수 있으므로(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위 회보를 간행한 이유는 여러 가지이나, 그 중 하나는 새로운 회원의 가입을 권유하기 위한 것이다.) 위 설시는 이 점에서 위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에서 나라만 원칙-「과실없이 책임을 과할 수 없다」-에 위배하는 것이다.

결국, 위 설시에는 피고의 합리성을 언급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설시가 부적절함에는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개념도 「악의」와 관련하여 설정된 것이고 따라서 합리성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를 들면, 증오 또는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였거나, 또는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외의 이유로 행동한 경우 등)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1 심 법원의 배심원단에 대한 설시가 부적절하였다고 결론 내린다면 그러한 잘못을 이유로 1 심 평결을 파기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이를 위하여는 그러한 잘못이 배심원단을 오도해서 그 평결의 하나의 요인이 되었는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 고려한 사정으로서의 주요쟁점에 관한 증거의 모순의 정도, 피 항소인의 배심원에 대한 주장의 내용, 그 하자를 치유함에 있어서 다른 설시의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Seaman's Direct Buying service, Inc. v. Standard Oil Co.* (1984) 36 Cal. 2d. 752, 771).

위 요소를 고려하면 이 사건은 마땅히 파기되어야 한다 첫째로, 그 설시는 법을 곡해하였고 둘째, 원고측은 배심원단에게 악의에 관한 1 심 법원의 위 3 가지 정의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피고측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SCWAR 의 과실이 원고의 명예훼손 성립에 있어 하나의 요소라는 점을 배심원에게 주지시킬만한 아무런 설시가 없었기 때문에 위 설시는 편파적인 것이라고 인정되고 1 심으로 파기, 환송한다.

2. 배심원단이 원고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는 New York Times 판결과 같은 정도의 악의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시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SCWAR는 1심 법원은 배심원단에게 원고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는 New York Times 판결과 같은 정도의 악의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시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다.

「사인인 원고는 어떠한 손해라도 배상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일 때는 원고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New York Times 판결과 같은 정도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위 Brown v. felly Broadcasting Co. ,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 및 B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s (1985) 472 U.S. 749,756)

New York Times 판결과 같은 정도의 악의는 그 보도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거나, 또는 그 내용이 허위인가의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하고」 출판되었을 때 성립한다.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1964) 376 U.S. 254, 279, 280)

원고는 이 사건 회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악의의 입증이 필요 없다고 다투므로 SCWAR의 회보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가를 살피기로 한다.

아마도 매스미디어에 의하여 출판되는 모든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며, 캘리포니아 주 연방대법원도 「광범위한 정도로 매스미디어에 어떤 내용을 보도하는 행위 자체는 그 내용상 공공의 이익을 포함한다. 그 기사내용이 선정적이고 유해할수록, 더 공익과 관련하게 된다」 (위 Brown v. Kelly Broadcasting Co. 판결, 48 Cal. 34. 752)고 판시 하였다.

연방대법원도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가의 문제는 전체기록을 통해 본 그 내용, 형식 및 보도경위를 검토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고 판시 하였다(D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s (1985) 472V.S. 761).이 법원이 SCWAR의 회보내용, 형식 및 보도경위를 살펴본 즉 이는 성적 폭행과 희롱이라는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공익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고 본다. 그 내용은 강간 응급전화 등 여성에 대한 서비스 제공, 성적 희롱에 대한 강의와 정보전달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와 아울러 폭행 · 강간 용의자에 대한 신원을 게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SCWAR의 회보는 성적 폭행과 희롱이라는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공익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1심 법원은 배심원단에게 원고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는 New York Times 판결과 같은 정도의 악의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시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심 법원이 원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3. 배심원단이 원고가 추정손해를 배상 받기 위하여서는 New York Times 판결과 같은 정도의 악의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시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SCWAR는 배심원단이 원고가 추정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하여서는 New York Times 판결과 같은 정도의 악의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시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설시는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이유 없다.

즉, 연방대법원은 위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418 U.S. 323)에서 「명예훼손 소송에서 손해액은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의 평판 및 명예, 정신적 고통 등의 회복에 필요한 금액도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 사건 제 1 심 법원은 배심원단에게 원고의 손해액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로서 원고의 명성, 수치, 지역사회에서의 지명도 등을 열거하였으며, 또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법률상 정해진 규칙은 없으므로 불편 부당한 입장에서 재량의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산정하라고 실시한 것은 정당하다.

4. Karen의 원고와의 화해에 의한 사죄편지가 증거로서 잘못 채용돼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SCWAR는 Karen의 원고와의 화해에 의한 사죄편지가 증거로서 채용된 것은 증거법 1152 조 제 (a)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증거법 제 1152 조 제(a)항은 화해나 타협의 증거를 화해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증거로 채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그러한 원칙은 당사자로 하여금 화해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을 위축시키지 아니하여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Field Associations, Inc. v. Whitecliff Laboratories, Inc. (1969) 276 Cal. App. 2d.770, 773)

이 사건에서는 Karen의 편지가 Karen의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 아니고, SCWAR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목적으로 SCWAR 회보의 보도내용의 진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로 제출된 것이므로 제 1 심 법원의 조치는 정당하다.

5. 강간으로 인한 쇼크증상에 관한 증언이 배척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SCWAR는 강간피해자인 Karen의 행동이 강간으로 인한 쇼크증상과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 회원의 증언 및 심리학자 등의 감정증인을 신청하였는데, 1 심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 라고 주장한다.

Delia 5. v. Torres(1982) 134 Cal. App. 30.471 판결에서는 전형적인 강간피해자의 강간 후 행동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감정증인을 채택하였으나, 그 후 우리 주 대법원은 People v. Bledsoe,(1984)35 Cal. 3d 236, 238 판결에서 강간 발생 자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감정증인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왜냐하면 (검사는 강간으로 인한 쇼크증상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그 목적은 강간피해자의 강간 후의 일반적인 정황에 대한 그릇된 생각에 대한 반증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법률상 의미의 강간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SCWAR는 위 증언을 피해자인 Karen의 행동이 강간으로 인한 쇼크증상의 전형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하였는데, 기록에 나타난 Karen의 강간 당하였다는 후의 제반 정황은 배심원이 강간피해자의 통상적인 성적 폭행 이후의 행동을 연상시킬 수 있는 것이며 일반적인 성적 폭행 이후의 정황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 강간으로 인한 쇼크증상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SCWAR는 위 증거가 자신이 Karen의 주장을 사실로 믿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강간으로 인한 쇼크증상은 진실발견을 위한 도구로는 사용될 수 없고,

오히려 전문 강간상담원을 위한 치료의 도구로서 고안된 것이므로, 위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도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SCWAR 는 위 증거가 Karen 이 Carney 에게 왜 사죄편지를 교부하였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증거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강간피해자라고 주장하는 Karen 이 위와같은 편지를 쓴 것은 자신이 강간 당하였다는 주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의 환송 후 재판에서는 위 목적을 위하여 위 증언은 증거로의 채택이 가능할 것이다.)

6. 기타 주장에 관하여 SCWAR 는 위에서 본 주장 외에도 ① 1 심 법원은 간이재결 결정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 소송대리인의 부정행위로 1 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③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이 과대하다는 등 여러 가지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을 어차피 제 1 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하기로 결정을 한 이상 SCWAR 의 기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을 파기하고 환송하기로 한다.